

꿈이모이는 도시
미래를그리는강남

속표지



52TH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정기총회

2023 . 2. 16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Gangnamg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안성 일죽 몰류센터 (40 ton/m²)



* 가남 몰류센터 (35~70 ton/m²)



* 아모레퍼시픽 제3공장 (50ton/m²)



*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65 ton/m²)



* 영중더 스텔라 (70 ton/m²)



* 광안동 신영건설오피스텔신축 (50ton/m²)



*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 (23 ton/m²)



* 나주 엘가람 오피스텔 (40ton/m²)

지반보강 전문기업
퍼즐기초
www.puzzlegicho.com
 Tel: 02 561 0515
 e-mail: puzzlegicho@daum.net



* 강릉 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센터 (20 ton/m²)



* 동탄역 해리엇아파트 (55 ton/m²)



* W여성병원 (50ton/m²)



* 리안월드 리조트 (54 ton/m²)



* 제주 경찰청 (35 ton/m²)



*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30 ton/m²)

midas CAD ArchiDesign

문의전화
1899 - 9260

대안이 아니다.
솔루션이다!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산캐드**

건축 설계
특화기능 탑재!



업데이트	인증	교육		기능			
무제한 (추가 비용 없음)	Premium 네트워크 버전 (PC 무제한)	1:1 기술지원	온라인 (동영상) 오프라인 (본사교육) 교육	Premium 교재 / 매뉴얼 제공	DWG 전 버전 기능 호환	연속 출력 시트 분리 리습 탑재	Premium 건축설계 특화기능 탑재

LAW FIRM CHEONGCHUL

법무법인 청출은 김연장, 태평양, 광장, 세종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과 헌신적 열정을 기초로 법률업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젊은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원팀(One-Team)으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PROFESSIONAL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협업

DEDICATION

끊임없이 고민하는 헌신적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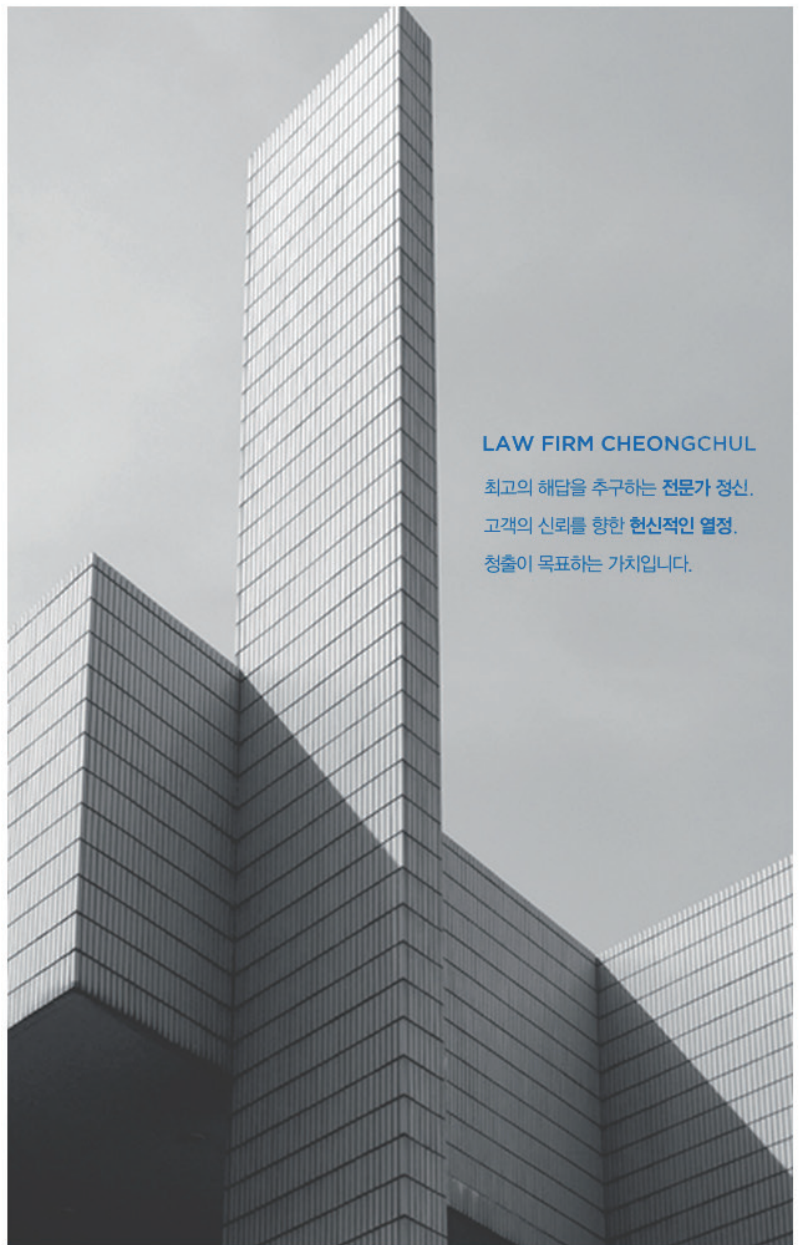
TRUSTWORTHY

고객의 신뢰를 얻는 법률 파트너



박종한 변호사

- 육군사관학교 입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민국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 군검사
- 대한민국 해군 군검사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LAW FIRM CHEONGCHUL

최고의 해답을 추구하는 전문가 정신.
고객의 신뢰를 향한 헌신적인 열정.
청출이 목표하는 가치입니다.

부동산/건설
Real Estate & Construction

- 청주시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 자문
- 서울시 대형 쇼핑몰의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자문
- 용산구 소재 고가 주택의 명도소송 및 집행
-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소송
- 개발사업 예정지 소재 분묘의 굴이 소송
-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서울시 중구 소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서울시 중구 소재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처분금지처분 등 각종 보전처분
- 토지매수용역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금융
Finance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SPC 설립을 위한 PF대출업무 진행
- 용인시 일원 개발행위허가 대상 부지 매수 관련 자문
- 여주시 소재 물류센터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해각서(MOU) 관련 자문
- 역세권개발사업 브릿지대출 관련 자문

민사/행정소송
Civil & Administrative Litigation

-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명도소송
- 강제집행정지 관련 담보제공방법의 변경 신청 사건
-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 공탁금의 취소 및 압류 해제 등 사건
-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무 관련 소송 및 집행
- 불법건축 공동주택의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반환청구 소송
-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체결한 계약의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 상가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비용 관련 소송
-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허가 취소소송
- 행정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유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관련 소송

기업법무
Corporate Compliance & Disputes

-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 오픈마켓 수입 판매업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검토 자문
- 전자자금결제대행업(PG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 해외 제조사와 국내 사업자 간의 독점적 총판계약에 대한 검토 자문
- F&B사업 진행 및 신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 자문
-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 대한 검토 자문
- 병원 동업계약서 작성 및 수익분배 구조 자문
- 의료재단의 헬스케어 사업 관련 자문
- 국가계약 입찰 관련 자문
-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위약벌 지급 청구 소송

목 차

1. 회순	09
2. 개회사	13
3. 제51회 정기총회 회의록.....	17
4. 우리회 현황	63
5. 주요업무보고	71
6. 2023 강남구건축사회 연간 일정 및 주요 행사 계획	79
7. 정기감사보고	83
8. 부의 안건	91
9. 강남구건축사회 경조비 지급 기준	129
10. 2022년 결산보고서	133

1. 회 순

회 순

제1부 정기총회 (16시)	사회_정 진 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회장_김 태 문
2. 국 민 의 례	
3. 건축사헌장 낭독	낭독_남 현 우
4. 개 회 사	회장_김 태 문
5. 제51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회장_김 태 문
6. 현황 및 업무보고	
1) 우리회 현황 : ▶ 회원현황 ▶입회현황 ▶임원현황	
2) 업 무 보 고 : ▶ 연간 업무보고 ▶ 후원현황 ▶경조사현황	
7. 감 사 보 고	감사_정 진 오
8. 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 2022년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일반회계 및 결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일반회계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예결위원장 이 운 희
제3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장 박 운 천
가. 회장1인 나. 감사1인 다. 운영위원8인	
제4호 의안 - 기타안건	
9. 폐 회	
제2부 (18:10 ~ 20시)	사회_정 진 섭
1. 2부진행 안내	회장_김 태 문
2. 케익커팅	고문, 자문, 회장, 귀빈
3. 연주	회원
4. 내외빈소개 및 축사	회장_김 태 문, 귀빈
5. 상장수여	회장_김 태 문, 귀빈
6. 만찬	사회_정 진 섭
7. 연주 및 경품추첨	사회_정 진 섭

2. 개회사

2023년 정기총회 개회사

존경하는 강남구건축사(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문 회장입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나 했더니 어느새 2월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며 세웠던 여러 구상들과 계획들이 좋은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모든 회원들이 좋은 결실을 얻어 연말엔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이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건축사회의 제52회 정기총회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차례의 비대면 총회를 거쳐 3년 만에 전 회원이 대면하는 이 총회는 지난 2022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총회일 뿐 아니라 저의 임기 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이기도 합니다.

뒤돌아 보니 저의 임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회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나마 우리회의 내실을 다지고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회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점검업무의 배정과 심의·심사위원의 추천을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들로 하여금 본협과 서울회에서 임원과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외부 기관에서의 활동 영역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요소들과 어우러져 신입회원의 영입과 회비의 수납 또한 한층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방역기간의 말미에 다행스럽게도 방역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치루게 된 건축사대회, 우리회 워크숍, 연말의 송년회 등의 행사에 예상외의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강남구 건축문화제, 고등학생 건축탐방 등의 행사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크게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과없이 저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 8월은 개정된 건축사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본협 또는 서울회에는 새로운 회원의 입회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지역건축사회는 의무가입의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낙수효과로 인해 우리회의 양적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차기 회장단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발전도 크게 이루어리라 기대합니다. 우리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장단의 노력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며 저 역시 미력한 힘이나마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회원들과 지금 이 시간 생업에 열중하고 계신 모든 회원들의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남구건축사(협의)회
회장 김 태 문 배상

3. 제51회 정기총회 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제51회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17시

◆ 장 소 : 강남구건축사회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사회 (이신호)

진행 순서는 총회 책자 5페이지의 회순과 같습니다. 처음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으로부터 국민의례, 마지막에 폐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으로 51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보고 및 개회사는 우리 회의 김태문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총회를 갖게 된 것이 무척 송구스럽긴 하지만 일단 우리 부회장 이하 임원진과 그리고 선관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감사님, 이렇게 참석하셨으며 또 회장단과 위원장, 감사님들 총 12명이 회장에 참석하셨으며, 회원 293명 중 79명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 재적인원의 10% 이상이 서면 동의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태문)

성원보고 회원 수 243명 중에 79명이 제출하신 서면동의서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 사회 (이신호)

재적 회원 수 243명 중에 79명이 서면으로 성원을 위한 출석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78명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에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문)

조금 전 말씀드린 것 중에 재적 회원 수 243명이 아니고 재적 회원 수 29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회사

◎ 사회 (이신호)

다음은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존경하는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문 회장입니다.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는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더욱더 발전하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구건축사회의 발전을 위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비드19로 인해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50회 총회에서 우리회를 단합하고 화목한 회로 거듭나게 하자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어언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회는 본협과 서울회의 운영에 우리 회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본협 회장님과 서울 회장님에게는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외부 기관의 추천에도 우리 회원들이 인원 비례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수시로 챙겨 왔습니다. 강남구청의 정순균 구청장님, 안재혁, 진조평 도시환경국장님, 이기택 건축과장님, 그리고 강남구 의회의 이향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 등을 만나 우리회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회 내부적으로는 점검 업무나 강남구청 심의·심사위원 추천을 공정하게 배분하였고 회계 또한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특별감사를 수감하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향후 우리회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계획하였던 임시총회 및 워크숍이 무산되고, 강남건축 문화제와 춘천 일원의 문화탐방 행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 초 건축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만에 부활한 의무가입 관련 개정이며,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에 이어 네 번째로 단일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목소리로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공적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의무가입이 대한건축사협회와 시도건축사회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우리 구건축사회에도 어느 정도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여러 비회원 건축사님들을 많이 영입하여 우리 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금번 51차 정기총회에 참여하시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또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건축사헌장 낭독

◎ 사회 (이신호)

다음은 남현우 건축사의 건축사헌장 낭독이 있습니다. 기립하여 주십시오.

◎ 남현우 건축사

건축사헌장 하나,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 일동

이바지한다.

◎ 남현우 건축사

하나,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일동

수행한다.

◎ 남현우 건축사

하나, 건축사는 기술 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 일동

다한다.

◎ 남현우 건축사

하나,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일동

보전한다.

◎ 남현우 건축사

하나,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일동

봉사한다.

◎ 사회 (이신호)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50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이 있겠습니다.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은 김태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 회의록 승인

◎ 의장 (김태문)

혹시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을 우편으로 보낸 책자로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한번 읽어볼까요?

◎ 일동

아닙니다.

◎ 의장 (김태문)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을 다 읽어보셨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회원 많음]

◎ 의장 (김태문)

그러면 지난 50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황 및 업무보고

◎ 사회 (이신호)

제50회 정기총회 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회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정기총회 책자의 29페이지, 우리회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현재 강남구청 업무 신고되어 있는 건축사는 총 1246명, 강남구 소재 서울시건축사회 회원은 638명입니다. 이 중에 저희 강남구건축사 협의회를 포함해서 가입돼있는 회원은 총 293명이며, 2021년 신규 건축사 입회하신 회원은 홍종철 건축사로부터 총 13명이 가입하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역대 회장님들께서 고문 및 자문으로 활동해 주고 계시면서 김규태 고문님 외 10명께서 고문으로 활동해 주시고, 권연하 자문님 외 5명께서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21년 강남구건축사회 운영위원회 명단은 33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과 성함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강남구건축사회는 총회 밑에 회장, 부회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 소위원회가 있고 3개의 동회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조직도와 같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은 교류협력위원회의 김호태 건축사께서 수고해 주시고, 문화교육위원회 송준환 건축사, 워크숍 및 세미나 위원회 남상득 건축사, 봉사 위원회 장종덕 건축사, 홍보 위원회 남현우 건축사, 회관관리 위원회 홍사원 건축사, 회원친목 위원회 이종우 건축사, 사업기획 위원회 장병갑 건축사, 회원관리 위원회 한대희 건축사, 예산결산 위원회 민경철 건축사, 여성건축사 위원회 김윤옥 건축사, 청년 위원회 이옥정 건축사께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황 및 업무보고

◎ 사회 (이신호)

다섯 번째로 37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원

이번에 운영위원회 임기 만료되시는 분 누구누구예요?

◎ 사회 (이신호)

운영위원회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요? 남상득 건축사, 김윤옥 건축사, 송준환 건축사, 장병갑 건축사, 최종천 건축사, 한대희 건축사, 강철구 건축사, 김동희 건축사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회원

알겠습니다.

◎ 사회 (이신호)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월에 회장단 회의로부터 2~3월, 4~5월, 39페이지 업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는 40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9~10월에는 워크숍 회의를 실시하고 11~12월에 아쉽지만 워크숍을 작게나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41페이지에 기부 현황을 보시면 민승열 건축사, 박근만 건축사, 강일원 건축사, 박운천 건축사, 윤재현 건축사, 이성표 건축사, 우창수 건축사, 이윤희 건축사, 이종해 건축사, 홍종철 건축사님께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점검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공개공지 및 미술작식품, 중대형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6명의 건축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경조사 현황은 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2022년 일정 및 주요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정 및 주요 행사계획은 1월과 2월은 이미 실시했는데 오늘 2월 15일 자로 제51회 정기총회까지 실시했습니다. 2월에 건축사신험 총회, 대한건축사협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3월에 공제조합 총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서울건축사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18일에 우리회 운영위원회 신임 임원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에는 건축과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7~12월까지 행사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 및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기 감사보고는 상대정 건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일단 일사천리로 우리 이신호 님이 진행하셨는데, 우리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 일정 및 주요 개략적인 행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보고에 관해서 승인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회원 많음]

[의사봉 3타]

감사보고

◎ 사회 (이신호)

다음은 정기 감사보고를 상대정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감사 (상대정)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감사보고는 2022년 1월 19일에서 1월 21일까지 우리회 회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비드19라는 당혹스러운 환경에서 2021년 2월 24일 제50회 우리회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운천 회장님 다음으로 26대 김태문 회장님이 당선되어 3월 8일 인수인계식을 계기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봉합하고, 신임 회장님의 선거 슬로건인 새로운 “강남 다운 강남”을 위한 노력 여부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일이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 출범 후 약 6개월이 된 시점인 2021년 8월 12일~13일 양일간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회원님들에게 2021년 8월 26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특별감사 보고서는 정기감사 보고 뒤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2021년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2022년 01월 05일 감사 통보서를 제출하고 2022년 01월 19일~21일에 걸쳐 정기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및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규정에 따라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야 감사와 회계분야 감사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묶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였고요. 감사보고서 부분을 다 읽기보다는 요약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분야 감사의 주안점 및 요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는 회원명부 및 의사소통 방법은 우리회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홈페이지 리뉴얼 이외에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⑩항에 각종 회칙 및 규약, 규범, 등에 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회 단합에 문제 되는 각종 운영규정, 규칙 및 선거권자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 회칙 및 각종 규정이 서울협회 각종 회칙, 규칙, 기준, 지침 등과 서로 상충되고 또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우리 회원 간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코로나 상황 등 우리회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재정비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동안 병행하여 사용했던 “강남구 건축사회”와 “강남구 건축사 협의회”와의 명확한 관계 규정을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칙에 반영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 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많으니까 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보고서는 세무사 작성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작성 및 집행되었

으나 우리회 수입, 지출 항목과 결산보고서의 항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수입, 점검비는 실적회비, 공사안내판은 안내판 수입, 기타 사항인 이자 수입 및 찬조 수입으로 분리 지출되어 있어 항목순서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예산, 결산 작성 시에는 세무사 결산 보고서와 우리회 수입, 지출 항목을 일치시켜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협회 보조금 운영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서울협회 감사를 대비해서 실제 지출 항목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회는 정기총회 51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작년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화합 및 소통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회장님 및 집행부,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선배 회원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고, 관련 자료는 뒤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의장 (김태문)

감사님 두 분이 정말로 아주 알뜰하게 감사를 하시고 그 감사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감사님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라도 다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했는데 아마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향후 우리가 다시 이걸 보면서 집행부는 이 내용대로만 따라가도 굉장히 또 다른 우리 강남구건축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보고 부분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회원 많음]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 사회 (이신호)

다음은 8번 진행사항으로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올라온 안건은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의 안건이며 필요시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은 2021년 강남구건축사회 일반회계 및 결산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202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수지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21회계년도 결산을 붙임과 같이 제51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근거는 회칙 제14조 제1항 2호에 근거합니다

다. 각 안건은 안건별로 심의하고 상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안건은 예결위원장 이신 민경철 건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예산결산위원장 민경철 건축사입니다. 제1호 의안은 일반회계 및 결산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은 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감사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의문 사항이 있다가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제1호 의안 일반회계 및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장님의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혹시 일반회계 및 결산서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회원 많음]

감사합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예결위원장 (민경철)**

다음은 제2호 의안 강남구건축사회 일반회계 및 수지예산에 대한 승인 건인데요. 이거는 2022년도 수지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큰 내용은 수입예산에서 회비수입이 건축사 회원들의 의무가입으로 인해서 신입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21년도 예산보다 조금 높게 잡았다는 것, 수입예산에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건축사회 수입이라든가 회원들의 회비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책자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출예산이 있는데 지출예산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절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출예산이 2021년도 예산과 2022년 예산을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21년도 예산대로 동결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품목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품목이 늘어난 게 홍보비에서 원래 홍보비에서 건축문화제 비용을 썼는데 그것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홍보비를 쪼개서 건축문화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회 회원 지원에 관련해서 3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산악회, 축구, 당구 동호회가 있는데 일부 회원들이 아마 민원을 회에 넣은 게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뜻에서 등산동호회라든가 축구는 동결을 했는데 당구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단 말이죠. 등산이나 축구회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당구는 보통 모이면 4~5명, 많으면 6명까지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당구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사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전액 회비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회비 납부가 안 된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지원을 해줬거든요. 앞으로는 그 지원금을 전액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다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지출을 짝습니다. 지출에 관련해서는 큰 내용은 그 내용이었고요.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수입예산에서 회비수입이라고 했는데 그 회비수입이 26,500,000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이거는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회원들이 의무 가입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너무 막연한 거 아니예요? 회비 얼마가 몇 명이 가입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얼마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막연한 수입이 아니냐.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근데 늘어날 예산을 보면 한 1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오차가 클 수 있는데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수입예산에서는 오차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서울시 협회에서도 예상 인원으로는 800여 명 정도 서울시에 한해서 8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추측이죠. 그런데 우리 강남에서는 1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예산에 대한 건 없습니까?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지출에서는 친목행사 지원금에 보면 각 회마다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상황인데 이게 48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줄고 300만 원만 지원한다고 하면 축소한 거잖아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어디요? 동아리 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친목행사 지원금. 늘려야 할 판인데 축소한다는 것은 회원의 친목을 줄이겠다는 뜻인가? 하겠다는 뜻인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것은 그런 뜻으로 예산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이 어려우니까 지출예산을 2021년 대비 늘릴 수는 없고 동결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동결을 했는데 그 예산에 2021년과 동결했는데 줄어든 부분은 동호회 회비 지원에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 동호회가 20여 명 되고, 등산 동호회도 그렇게 되는데 당구 동호회는 4명 내지 5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된다. 그리고 별도 당구 동호회 같은 경우는 모여서 별도로 회원들이 또 낸대요. 모임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 대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래서 인원 대비를 해서 당구 동호회만 그렇게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어쨌든 동호회비를 따로 건잡아요. 축구 동호회도 따로 건어야지 될 수 있는 것이고 등산도 따로 건지 않으면 차량 이런 것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걸 회비 100만 원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김태문)

이런 거는 이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늘리는 것으로 의결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태문)

아, 이 자리에서?

◎ 사회 (이신호)

그런데 서면결의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 의장 (김태문)

아, 그렇구나.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아니면 예비비에서.

◎ 의장 (김태문)

예비비나 다른 목간 전용을 통해서 늘리도록 한번.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비비나 다른 걸로 좀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장 (김태문)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입회원들이 늘 거라고 예결위원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마 신입이 생기는데 한 6개월, 그다음에 유예기간이 1년 이래서 사실 의무가입이라는 것이 가시화되는 것은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구건축사회의 낙숫물로 떨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산 늘려놓은 게 많이 늘려놓은 건 아니어서 지난 2021년에 보면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회비 수입이. 실제는 그때 3,400만 원 걸었어요. 회비도 많이 걷고 신입회원들도 꽤 19명 정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동호회 지원금에 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목간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전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이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도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꾸준히 한 것 같은데 등산이나 당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예산은 그대로 다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사실 평소에 동호회가 항상 풍족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덜 쓴 부분은 또 모아놨다가 쓰시면 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요.

◎ 회원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행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호회 지원이지. 그런 거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우리 예산이 점검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60%가 점검비에서 굉장히 우리 예산 사정이 불안한 상태예요. 만약에 점검이 줄어들면 진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 의장 (김태문)

그런 부분도 몇 개년 간의 추세를 봐서 별이가 관촬을 때는 저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관촬다는 이런 게 되면 실제 퍼센트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일단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맺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예산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융통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회원 많음]

◎ 의장 (김태문)

예,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에서는 찬성 77표, 반대 2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회 (이신호)

다음으로 제3호 의안 임원선출 승인의 건입니다. 감사 1인과 운영위원 8명에 대해서 고요. 의결주문은 회칙 제8조에 의거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기로 의결한다, 입니다.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건축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1인, 운영위원 8인에 대해서 투표하였는데 감사 1인이 나왔고 운영위원은 10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에다 많은 숫자대로 선출을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9시부터 16시까지 전자투표를 하였고 전자투표 결과가 감사 찬성 88표, 반대 4표, 기권 2표, 그다음 운영위원 송준환 찬성 90표, 장병갑 찬성 84표, 하상호 찬성 81표, 김동희 찬성 83표, 김승욱 찬성 33표, 이신호 찬성 88표, 윤재현 찬성 27표, 윤유 찬성 85표, 김윤옥 찬성 82표, 조재경 찬성 78표를 얻어서 송준환, 장병갑, 하상호, 김동희, 이신호, 윤유, 김윤옥, 조재경 여덟 분이 운영위원회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신가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당선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김승욱, 윤재현.

◎ 예결위원장 (민경철)

김승욱과 윤재현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그렇죠. 10인이니까 2인은 탈락이 돼야 하니까.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 보면 규칙에 운영위원이 될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도 승인이 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남회 회칙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인원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 두 분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했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운영위원을 선출했던 내용입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예.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의의가 없으면 감사는 안흥섭, 운영위원은 송준환, 장병갑, 하상호, 김동희, 이신호, 윤유, 김윤옥, 조재경 위원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회칙이라든가 선례라든가 관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견도 많았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대면으로 할 것인지,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선관위원장님하고 6인의 선거관리위원님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두 분 여기 계시고 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시고, 일단 여기 세 분이 계시니까 박수 한 번 쳐 드리죠.

[일동박수]

그러면 2022년도 새롭게 감사 한 분과 운영위원 8인을 선출한 선거를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회원 많음]

[의사봉 3타]

◎ 사회 (이신호)

다음으로 제4호 의안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입니다. 회칙 개정 위원장인 남상득 건축사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총회에 불참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사회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한다, 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온라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근거를 회칙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의결 근거는 회칙 제 14조입니다. 76페이지 4번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변경 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제7조 회원입니다. 개정된 회칙 안은 강남구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서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로 소속 건축사의 가입 근거를 마련했구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제13조입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이 7조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가 다른 점이 뭐죠?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우리회 등록을 한 자로 한다.”가 빠져있거든요. 서울회 회원이 우리 회원이 되는 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는데.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러니까 그 구조문하고 신조문하고 변경된 차이점이 뭐냐고요.

◎ 회원

소속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무실을 개설하고, 개설 안 하면 소속 건축사는 인정 못 받거든요. 그 부분을 바꾼 것 같은데, 지금 문의하신 게 “서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모호한 게 “우리 회에 등록한 자”가 빠져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상당히 민감할 것 같아요.

◎ 회원

이게 아마 의무가입에 대해서 개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울 시도까지는 의무가입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구건축사회는 한마디로 정회원 자격이 아닌 사람은 안 받는다는 얘기

잡아요. 그렇죠?

◎ 회원

그런 규정이 맞는 것 같으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지금까지는 우리 강남구 건축사회에 들어와서 별도로 등록을 해야 정회원이 되는 거고 바뀐 회칙대로 하면 별도로 등록 절차 없이도 정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의무가입 자체가 지금 서울 시도까지고 구는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회원

이게 뭐냐면 모순이 있는데요. 어차피 의무가입이면 다 회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입 안 하면 뭘 못해요. 무조건 가입한 사람이 강남회 등록이 돼야 하니까.

◎ 예결위원장 (민경철)

강남구건축사회에 서울시 정회원이라도 강남구건축사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 회원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본협하고 서울시 정회원이에요. 근데 제가 강남건축사회의 회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시까지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지만 구건축사회는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강남회 회원에 가입을 안 했어도 강남회 회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회칙마저 이렇게 바꿔버리면 근거가 안 돼도 무조건 강남구건축사회 회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회의 회원은 강남구에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개설된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서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 정회원이 되면 강남구 건축사회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 회원

그것은 정회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회원만이 우리 강남구건축사회의 회원이고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 회원

이 부분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속된 건축사, 서울회 정회원부터 강남구건축사회 우리회에 등록한 사람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신·구조문에서 구조문에서는 “소속 건축사”가 없는 거고, 여기 신조문에서는 “소속 건축사”는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회원**

뒤에 게 빠져버렸어요. 우리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의장 (김태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원래 취지는 “강남구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라는 이 항목을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건축사회 같은 경우에도 꼭 개설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개설된 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속 건축사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구건축사회라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넣기 위해서 만든 건데.

◎ **회원**

그 부분은 넣었는데 뒤에 것을 뺀 거죠.

◎ **의장 (김태문)**

앞에 것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회 회원은 강남구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서울회 정회원이며 우리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빠진 부분이 보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이거는 통과될 때 보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태문)**

예, 이렇게 조건부 통과도 가능하죠? 지금 방금처럼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 **사회 (이신호)**

수정 가결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서면결의 제출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고 찬반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 가결이.

◎ **의장 (김태문)**

아니면 그렇게 구성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등록 안 해도 되나요?

◎ 사회 (이신호)

수정 가결을 하기에는 저희가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우리가 수정 가결을 해서 이런 조문을 수정해서 가결이 됐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고 회원님들에게 또 뿌리면 되는 거죠.

◎ 의장 (김태문)

그런 문제도 있네요. 서면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 사회 (이신호)

그러니까 민 건축사님 말씀처럼 수정 가결한 거에 대한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총회가 안 끝난 상태가 되니까.

◎ 회원

제가 얘기할게요. 서면결의서 받은 것은 정족수도 되지만 약식으로 회의를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사회 (이신호)

죄송한데 제가 심지어 서면결의를 안 해서 서면결의서 양식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표결 내용이 들어있나요? 찬반이 있으면 이 안으로 찬성을 보내신 거니까 거기에는 수정한다, 안 한다에 대한 동의를 아니라 그냥 찬성만 반대만 있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우리 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문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원안만 가지고 찬반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했을 때.

◎ 회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 회원

그러니까 회의 자체 권한은 위임을 했다고 하면 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했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김태문)

그러면 이것으로 봅시다. 우리가 현재 회원은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8조에 또 입회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회의 회원

중 우리회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으로 아까 등록한 자로 한다는 말을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꾸지 않더라도.

◎ 사회 (이신호)

바꾸지 않더라도 이 입회 문구가 있어서 가능하고 절차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위임 동의를 아니고 결의에 대한 서면 제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 가결을 하게 되면, 수정하게 되면 가결이 될 수 없습니다.

◎ 의장 (김태문)

그럴 것 같아요.

◎ 회원

7조는 자격의 기준이고.

◎ 의장 (김태문)

예,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고 입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뒤에 8조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죠. 그리고 또 이것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면.

◎ 회원

원칙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다음 총회 때 다시 보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A라는 건축사가 서울시까지 의무가입을 했어요. 근데 강남 총회에 나와서 나 그냥 한다고 하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회원을 다 할 수 있거든요.

◎ 의장 (김태문)

예, 우리 그러면 다음 기회에 고치는 것으로 하죠.

◎ 사회 (이신호)

7조는 8조가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고, 7조 1항의 원안은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8조에 의해서.

◎ 예결위원장 (민경철)

회칙에 대해서는 통과됐는데 추후 수정 보완한다는 식으로 해서.

◎ 사회 (이신호)

예, 해서 임시총회를 하거나 다음 총회에. 그다음 제13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조 1항의 4

호입니다. 기존 13조 1항의 4호는 “우리회에 대한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됐을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2인이므로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 **감사 (상대정)**

그것을 바꾸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 바뀌도 법원의 판결은 감사라고 있을 때 감사가 2명이면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도 되지만 확실하게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 **감사 (상대정)**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임원을 보면 감사가 2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2인 이내기 때문에, 1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1인인데 여기에 딱 2인으로 박혀있으면 오히려 임시총회 소집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일단 현재는.

◎ **감사 (상대정)**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앞뒤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감사 뒤예를 2인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 **회원**

감사가 10명이더라도 그냥 감사가 소집할 때면 10명이 다 동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 **의장 (김태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유권해석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 **감사 (상대정)**

이거 뒤예를 그러면 감사를 아예 2인이라고 놔두면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야 되니까 감사 부재 시에는.

◎ 회원

2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 전원이.

◎ 감사 (상대정)

이것도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의장 (김태문)

예, 안 되는 거죠.

◎ 사회 (이신호)

오늘 나온 의견들은 잘 기록을 해봤다가.

◎ 의장 (김태문)

다음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 (이신호)

제15조 총회 성립 및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4항이 추가되었는데 4항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총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우리회의 서면결의로 행사하거나 임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총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15조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제19조를 보시면.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잠깐만요. 5항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 사회 (이신호)

5항 읽겠습니다. 회원의 의결권 위임 범위는 제13조 5항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부의안건에 한하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위임 및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1항을 보시겠습니다. 1항의 1호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호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4호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지금 우리가 회칙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비대면으로 의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해놓고 지금 하고 있고 또한 회칙이 변경되기 전에 우리는 비대면 선거를 했어요. 그동안 비대면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대면 선거를 했다는 거죠. 회칙에 소급해서 근거를 했으니까.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선거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회 그 자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일단 서울건축사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죠.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그러면 우리가 서울회에 의견을 질의해서 했으니까.

◎ **의장 (김태문)**

이번에 새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은 곳이 비대면으로 하셨습니다.

◎ **회원**

전염병이 우리 회칙개정하고 오라는 것도 안 되고 긴급하게 업무에 대해서 맞게 소급해서 적용하고 개정하고 맞춰가는 거죠.

◎ **사회 (이신호)**

회장님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개정될 회칙의 소급은 아니고 전년도 서울시 회에서 유권해석 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총회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회 자체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회원**

향후 이것이 박힘으로써 모바일 투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의장 (김태문)**

모바일 투표는 괜찮은데.

◎ **회원**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에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 **사회 (이신호)**

서면결의하고 전자투표는 다른 사안입니다.

◎ **회원**

전자투표는 직접 투표입니까?

◎ 사회 (이신호)

예, 직접 투표입니다.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19조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전자투표가 직접 투표로 보는 거예요?

◎ 회원

그렇죠. 형태만 바뀐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자기가 눌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투표죠.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우리가 국가에서 투표할 때는 전자 투표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해야지 하는 것인데 전자 투표로 하는 것이 직접 투표라고 하니까.

◎ 회원

국가는 다르지만 그 이외에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전자투표를 하니까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그런 규정을 회칙에 만들었을 때는 맞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말이에요.

◎ 회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만약 부정된다고 그러면 그날 이후에 저희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돼야 해요. 과연 그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돈 쓰고 그런 건 다 횡령이에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회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왔던 분들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한 사람들이니까.

◎ 의장 (김태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과거 회칙이라든가 협의회 회칙이라든가 선거관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든가 서로 양해하에서 해왔었는데 향후에는 그나마도 조금 더 정비하자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도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회원

현재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그나마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조직의 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의장 (김태문)

몇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당히 그 몇몇 사람의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만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고 공감대,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 회원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는 데에 서면이라는 것이 종잇장만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제출하지 않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 의장 (김태문)

일단 종잇장으로 봐야 되겠죠. 서면결의는.

◎ 사회 (이신호)

서면결의하고 전자투표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꼭 우리회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도정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으로 보는 겁니다. 서면결의는 직접 출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총회를 할 때 직접 출석 인원이 몇 %가 돼야 한다고 했을 때 서면결의는 의사 표현을 한 투표이긴 한데 직접 출석으로 치지 않는데,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출석자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서면결의와 전자투표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직접 오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의 행위 자체는 같은 모양이니까.

◎ 회원

서면결의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게 확실하면 괜찮은데, 그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쭙본 겁니다.

◎ 사회 (이신호)

그런데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하고 하게 되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직접 출석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다음 말씀드리면 14조 1항에 제1호, 3호, 4호 회칙 변경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했다.

◎ 의장 (김태문)

예, 그렇죠.

◎ 사회 (이신호)

박운천 건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조차 회칙개정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이걸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 감사 (상대정)

원칙대로 하면 이 회칙개정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

◎ 사회 (이신호)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회칙개정이 추진됐던 건데 작년 총회에 상정이 못돼서.

◎ 의장 (김태문)

원래 작년 임시총회 때 이걸 하려고 했죠. 대면 총회를 하면서.

◎ 사회 (이신호)

코로나가 다 끝나고 그냥 진짜 다 전원 출석하셔서 바꾸시든지, 이 상황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 규정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한 번은 넘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결위원장 (민경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혹시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안이 되는 거지. 기존 안이 되면 전체 회원들이 총회에 서 모였을 때 딱 하는 게 좋지 않지 않겠나. 말씀하신 대로 박운천 회장님도 이 회의하는데 누가 어떤 하자를 걸 수 있다는 얘기가.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전에도 이걸 하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고치고 계속 넘어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바꾼다고 하니까 과연 적법한 사항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 **회원**

그러면 총회 회칙개정을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꼭 넣어야 돼요?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회 회칙에 이 조항을 갖고 있어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여기 넣었다면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지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듯이 결국은 계속 빙빙 돌면서 아무것도 개선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위험부담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또 지난 십수 년간 위험부담 속에서 우리가 맞지 않는 회칙을 다 안고 온 거예요, 사실은.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이게 들어 있으면 이제 진짜로 서면으로 못 해요. 들어있으면 진짜 못하죠. 못하게 딱 박아 났으니까.

◎ **예결위원장 (민경철)**

위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못하는 거죠. 법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 **의장 (김태문)**

그래서 나도 이 부분이 이러면 서면결의를 인정해 주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담은 역시 서울회 자체도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이고 만약 서울회가 그 부담

을 완화하려고 회칙을 바꾼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고 보여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서울회 회칙도 절대 서면결의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 서면결의로 한다? 회칙하고 임원 선출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면결의로 하지 말아라. 그럼 거기에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 하는 자체가 위법한 거고, 우리가 다 묵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투표했으니까 위에 직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 **사회 (이신호)**

임원의 선출, 전자투표요.

◎ **회원**

그건 투표하고 서면 의결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준 거는 직접 투표로 했습니다.

◎ **회원**

그러니까 서면결의는 정족수 의미가 큰 거 아니에요? 회의를 성립하기 위해서 정족수고, 우리가 나머지 회칙개정, 임원 선출 이런 것은 다 전자투표로 했잖아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위임한다고 받았으면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위임이 아니라 의결을 하는데 찬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회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족수가 1/10이에요. 다음 운영회의 때 회원님들하고 더 참석을 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그때 개정을 별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 **사회 (이신호)**

저는 절차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찬성 표가 77표여서 여기에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 **회원**

아니요. 지금 우리 총회에서 이것은 우리 회칙에 어긋나서 인정을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 사회 (이신호)

저희 다 같이 한 표인데요?

◎ 회원

여기 지금 현재 회칙은.

◎ 의장 (김태문)

그런데 작년에는 협의회 운영규약이긴 하지만 이것도 총회에서 의결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서면결의를 했었어요.

◎ 회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게 옳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 의장 (김태문)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서면결의에 관한 제한조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전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으면 이야기가 나올 얘기가 아니잖아요.

◎ 회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현재에 있는 회칙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 의장 (김태문)

현 회칙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 회원

여기에 보면 서면 의결이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의장 (김태문)

그러니까 작년에도 회칙에 없던 서면결의를 했던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서면결의를 한 그 총회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도 좋다는 서울건축사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 회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작년 것도 잘못됐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사회 (이신호)

그렇죠. 근데 출석이라고 하면 직접 출석과 간접 출석을 포함하는 거니까 서면결의하시는 분들은 간접 출석으로서 저희 재적 회원 1/10 이상 출석이 성립이 됐다는 거죠.

◎ 회원

진짜 법적으로 따지면 직접 출석, 간접 출석이라는 정의를 가지려면 우리 조약 안에 그 정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잖아요.

◎ 사회 (이신호)

그것도 그렇긴 한데.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출석이란 직접 출석을 말하는 거예요. 본협회에 질의했을 때 출석이란 것은 직접 회의에 참석한 자로 한다.

◎ 회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을 안고서라도 강행해서 의결을 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또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하기 싫다고 그러면 지금 안 하면 돼요. 그 판단을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임시총회를 여기에서 하면 어때요?

◎ 회원

근데 작년에도 임시총회를 고려하다가 못 열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는 소집을 해야 되고.

◎ 예결위원장 (민경철)

어쨌든 5항을 이번에 넣음으로 해서 모든 회의 절차가 다 무효가 되는 꼴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 의장 (김태문)

그거는 앞의 절차까지도 다 소급해서 따지는 건 아니죠.

◎ **예결위원장 (민경철)**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이런 5항이 없었을 거예요. 뭘 위임할 수 없다는 명확한 지정된 게 없었을 텐데.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작년에는 우리 회칙은 변경을 안 했어요. 회칙은 안 하고 협의회 회칙은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사회 회칙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고, 협의회 것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회원**

그러니까 이런 상부의 지시도 이러한 규정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안 되는 얘기죠. 상도, 그게 없으니까 이런 해석을 내린 거죠.

◎ **예결위원장 (민경철)**

지난 것을 하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 **회원**

그게 걱정되면 작년 것도 잘못된 거죠.

◎ **의장 (김태문)**

회칙이나 협의회 회칙이나 다 똑같아요.

◎ **회원**

근데 작년 이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논리의 모순을 갖고 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 **사회 (이신호)**

근데 저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저는 이게 녹취가 되고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기타 의견들이 나오는 게 녹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롭게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논의 자체는 여기에서 논의된 게 77표의 찬성 서면 의결하신 분들의 표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회원**

그거는 다른 게 1호 안을 놓고 이렇게 서면을 받는 근거는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출발했어야 했어요. 그 근거가 불명확하면.

◎ 사회 (이신호)

이거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 회원

그렇죠. 유효하지 않은 거죠. 논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번 회의가 성립되겠다고 해서 서면결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 의장 (김태문)

잠깐만요. 일단 회칙에 위반된다는 것은 이 회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칙은 아직 회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 회원

지금 현행 회칙에 서면결의라는 회칙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굳이 바꾸고자 하는 거에서도 서면결의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죠.

◎ 회원

그게 그나마 빠지려면 명확하게 지정한 점을 없애면 유권해석을 내려서 할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넣고 그걸 받자고 하는 거니까 앞뒤 모순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고 해놓고서 그걸 지금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 회원

그게 서면결의는 총회가 성립할 수 있는 정족수에 관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투표는 저희가 안건을 다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사회 (이신호)

근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임원의 선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다릅니다.

◎ 회원

그런데 이번에 만든 회칙의 목적은 사실 서면결의라는 게 자세히 안 읽어보고 그냥 다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 회칙이 바뀌고 기본재산 처분하는 게 바뀌면 나중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과연 유효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러면 그럼에도 이런 절차의 모순을 갖고도 이걸 인정해서 의결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법을 해석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의결을 하자고요.

◎ **사회 (이신호)**

저는 이미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회원**

저는 어떻게 보면 유효하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사회 (이신호)**

그런데 설사 그런 판단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이걸 저희가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지금 총회에 참석한 회원 일개 개인들의 모임인 상태인 거잖아요.

◎ **회원**

근데 어차피 이걸 개정 후고 개정 전 현행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것은 1/10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되는 거니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결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사회 (이신호)**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로 해서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보고 진행을 한 거니까 그게 잘못된 출발이긴 한데 그게 아까는 이 총회가 현재 성립됐다고 성원 보고가 되었으니 저렇게 결의가 들어온 것도.

◎ **회원**

제 의견은 그거예요.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결의를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는 밤새도 못해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리고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회장님이 나머지 회의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해석을 받았단니까 그건 뭐, 그런데 지금 5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5항은 삭제하고 이번에 결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 **회원**

수정 결의는 안 되는 거예요.

◎ **의장 (김태문)**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부터 시행해야 될 회칙인데 왜 이거한테.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회장님, 회칙 변경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이것은 보류해놓고 나머지만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회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총회 끝난 거예요, 지금. 서면결의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처음에 보내기 전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어야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수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 **의장 (김태문)**

어쨌든 간에 회칙이든지 오늘 임원이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논리대로 따진다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회칙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감대를 가지고 서면 회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쪽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해왔고.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것은 총회 자체도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칙 개정한 이 절차가 이것도 서울건축사회에 우리가 보고를 해요. 총회를 하고 나면. 서울건축사회에서 “너네 회칙은 이번에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해 봐야 또 총회를 해서 해도 서울건축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을 하고 올려보자는 거지.

◎ **예결위원장 (민경철)**

내 생각은 작년에 우리 총회 결의를 이런 식으로 협의회만 했고 이걸 안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지만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면결의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것만 빼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총회에서 회원들한테 다시 보내서.

◎ **회원**

그것도 다른 개정안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이걸 안 되고.

◎ **의장 (김태문)**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 회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은 서면결의로 하고 회칙개정은 서면결의 안 하고, 이게 웃긴다는 거죠.

◎ 예결위원장 (민경철)

결론난 건데 뭐. 결론난 것을 가지고 뭐. 냈는데 모순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없던 것으로 해서 가게 되면 작년에 우리 진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 회원

작년에는 안 했다니까.

◎ 의장 (김태문)

작년에도 예산안이고 결산안이고 다 서면결의로 처리를 했잖아요. 회칙변경은 안되고 수지 결산안 그거는 서면결의가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 마찬가지로.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회칙 제정 및 개정을 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 의장 (김태문)

이거는 지금 회칙이 아니잖아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아니 이 항이 아니고 이 앞에 거라도 동일한 이야기로 출석하게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 출석을 동의하고 왔으니까.

◎ 의장 (김태문)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의회 회칙은 되고 회칙은 안된다는 게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의장님의 의견은 의결이 끝난 거니까 하고, 회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 의장 (김태문)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회 한 것을 서울회에 보고할 거예요. 보고를 하고 그럼 그 절차, 그리고 또 우리가 회칙 바꾼 것을 이사회에 올려요.

◎ **예결위원장 (민경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모든 회원들이.

◎ **의장 (김태문)**

거기에서 걸리면 우리가 그러면 부결됐다. 회칙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예결위원장 (민경철)**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데 단 하나의 우리가 모순에 빠져있는 그 부분을 누가 걸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 거예요.

◎ **의장 (김태문)**

그 처리는 나는 누가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회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이신호)**

근데 현재는 총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원 1인들이십니다. 76표의 찬성표를 1인께서 뒤집으실 힘은 없으신 거죠. 다 한 표씩 행사하시는 거니까.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이미 패스가 된 거예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총회는 끝난 거예요.

◎ **사회 (이신호)**

안건 상정을 하고 원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면결의를 이렇게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회의록이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의견들 나온 것은 기록이 되어서 충분히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뒤쪽에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약간의 문구라든지 단어를 수정한 사항이어서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열은 회색으로 있는 신조문이 붉은색으로 돼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필요하시면 보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전반적으로 이 회칙은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미비한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칙의 미비한 점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문맥상으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간략한 부분, 그리고 모바일 투표, 서면결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지 못했던 회칙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정도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거나 그런 회칙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서울회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회칙개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서울회에서 내린다면 우리가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서울회 이사회가 이것을 걸러주는 체라고 생각하십시오.

◎ **사회 (이신호)**

그러면 4호 안건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서면결의 찬성과 반대 결과를 공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제4호 의안은 찬성 76표, 반대 3표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회 (이신호)**

제5호 의안은 기타 안건입니다. 기타 안건 발언해 주실 회원님들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 **회원**

하도 오래돼서 그러는데 신입회원들 입회비가 어떻게 돼요?

◎ **의장 (김태문)**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체가 92만 원입니다. 92만 원인데 그중에 12만 원은 그 회의 연회비, 그러다 보니까 만약 10월에 입회를 하게 되면 4달 치만 내게 되니까 92만 원이 아니라 84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는 기탁금, 예탁금, 운영비, 나도 좀 헛갈리는데.

◎ **회원**

예전에 저 때는 입회비가 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4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5년인가

지나면 100만 원을 돌려주고.

◎ 의장 (김태문)

그래서 잠깐만요. 그 100만 원도 부담이 된다고 해서 100만 원을 1년에 이자 2%씩 따져서 2만 원씩 5년이니까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 중에는 10만 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40만 원은 우리 회를 떠날 때 돌려주는 거고, 30만 원은 운영비라고 해서 소멸하는 30만 원이 있죠. 그래서 그 80만 원 더하기 12만 원입니다.

◎ 회원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전에 저희가 기탁금 이렇게 냈잖아요. 협의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 의장 (김태문)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여기 회칙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부칙이 2019년 5월 19일 자 부칙이 있고, 2022년 2월 15일 자 부칙이 위에 하나 더 붙어요. 부칙이 자꾸 생기는 거죠. 기존 부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기는 거니까 부칙이 생겨야 되고 그 부칙에 따라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서울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한다는 부칙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태문)

96페이지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지금 부칙은 2019년도 5월 19일 자 부칙이고, 부칙이 아니고 생겨야 한다는 거죠. 부칙 2022년 2월 15일 자 제6조 우리회 회칙은 서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이 하나 붙어야 한다는 거죠.

◎ 의장 (김태문)

부칙마다 날짜가 붙게 되나요?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그렇죠. 새로운 부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법도 보면 부칙이 수없이 많잖아요. 계속 변경된 부칙이 계속 붙기 때문에.

◎ **의장 (김태문)**

다시 제1조 시행일 해서 이 회칙은 서울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걸 하나 더 넣는 거죠?

◎ **회원**

서울협회나 본협도 그렇고 얘기 나오는 것이 협의회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그런 관계 정립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정 부분 다 환원해서 없애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 **회원**

협의회를 다 무시하고 건축사회로 다 위임한다?

◎ **회원**

네, 그런 느낌인데.

◎ **의장 (김태문)**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협의회를 없애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조롭게는 안 되겠지만, 순조롭게는 절대 안 돼요. 뭔가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회와 협의회는 좀 분리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회원**

그래서 분리하려면 협의회장 따로 뽑고 건축사회장 따로 뽑고 그게 우리가 하는 건데.

◎ **의장 (김태문)**

그러면 그런 것들은 회칙에서 조정할 수가 있죠.

◎ **회원**

그니까 어쨌든 간에 얘기가 안 나오게 정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회원**

근데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건축사회의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협의회가 훨씬 나아요.

◎ **회원**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가 강남구건축사회를 운영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 **예결위원장 (민경철)**

기타 안건이니까 우리 새로운 신임감사가 여기 계신 것 같아. 원래 우리 총회 때 신임감사의 당선 소감을 들었거든.

◎ **의장 (김태문)**

아까 하실 때 그때 해야 됐던 거 아닌가요?

◎ **사회 (이신호)**

그러면 다음으로 3호 의안에 의거해서 신임감사로 선출되신 안흥섭 건축사님께 당선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증 수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박운천 건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박운천)**

당선증, 대표건축사 안흥섭, 성준 종합건축사사무소, 귀하를 우리회 회칙 제19조에 의거 제 51회 총회에서 감사로 당선되었기에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일동박수]

◎ **사회 (이신호)**

당선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 **신임감사 (안흥섭)**

지금까지 강남구건축사회에서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원님들의 격려 속에 그나마 잘 왔는데 이번에 또 감사로 출마해서 감사로 출마하니까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다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예결위원장 (민경철)**

의장님, 퇴임하시는 분은 퇴임 인사 안 해도 되나요?

◎ **사회 (이신호)**

다음은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강남구건축사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회장님과

운영위원께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운천 고문님과 호명 받으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정 감사님, 장병갑 위원님, 수여는 김태문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건축사 박운천. (주)열림건축사사무소, 귀하께서는 본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헌신적인 봉사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장 김태문 대독.

[일동박수]

다음은 상대정 건축사님 나와주세요. 공로패, 건축사 상대정. (주)와이케이에이치 건축사사무소. 귀하께서는 본회 감사로 재임하시는 동안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헌신적인 봉사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장 김태문 대독.

[일동박수]

다음은 장병갑 건축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건축사 장병갑. 에이앤티 건축사사무소. 귀하께서는 본회 운영위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헌신적인 봉사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장 김태문 대독.

[일동박수]

◎ 회원

공로패 이신호, 이신건축사사무소. 귀하께서는 본회 총무로 재임하시는 동안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헌신적인 봉사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장 김태문.

[일동박수]

폐회

◎ 사회 (이신호)

이로써 제51회 총회를 마치고 회장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문)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이 사실은 잔잔하게나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향후에는 나머지 제 임기 남은 1년 동안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서 잘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협회, 우리회, 강남구건축사회하고 강남구건축사협의회하고 분리하고 정립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원들 친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겠지만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옛날 우리 구역장이 있듯이 꼭 그리고 시스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구역마다 다니면서 우리 회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젊은 건축사들을 앞세워서 강남구청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새로운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서 머리를 많이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위 錄取錄은 速記法에 의하여
記錄, 作成되었음을 確認 함.

2022년 02월 24일

장 미 래 

4. 우리회 현황

▶ 회원현황

(2022년 12월)

가 입 현 황		
강남구청 업무신고	강남구소재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강남구건축사 (협회)회원
1236명	680명	3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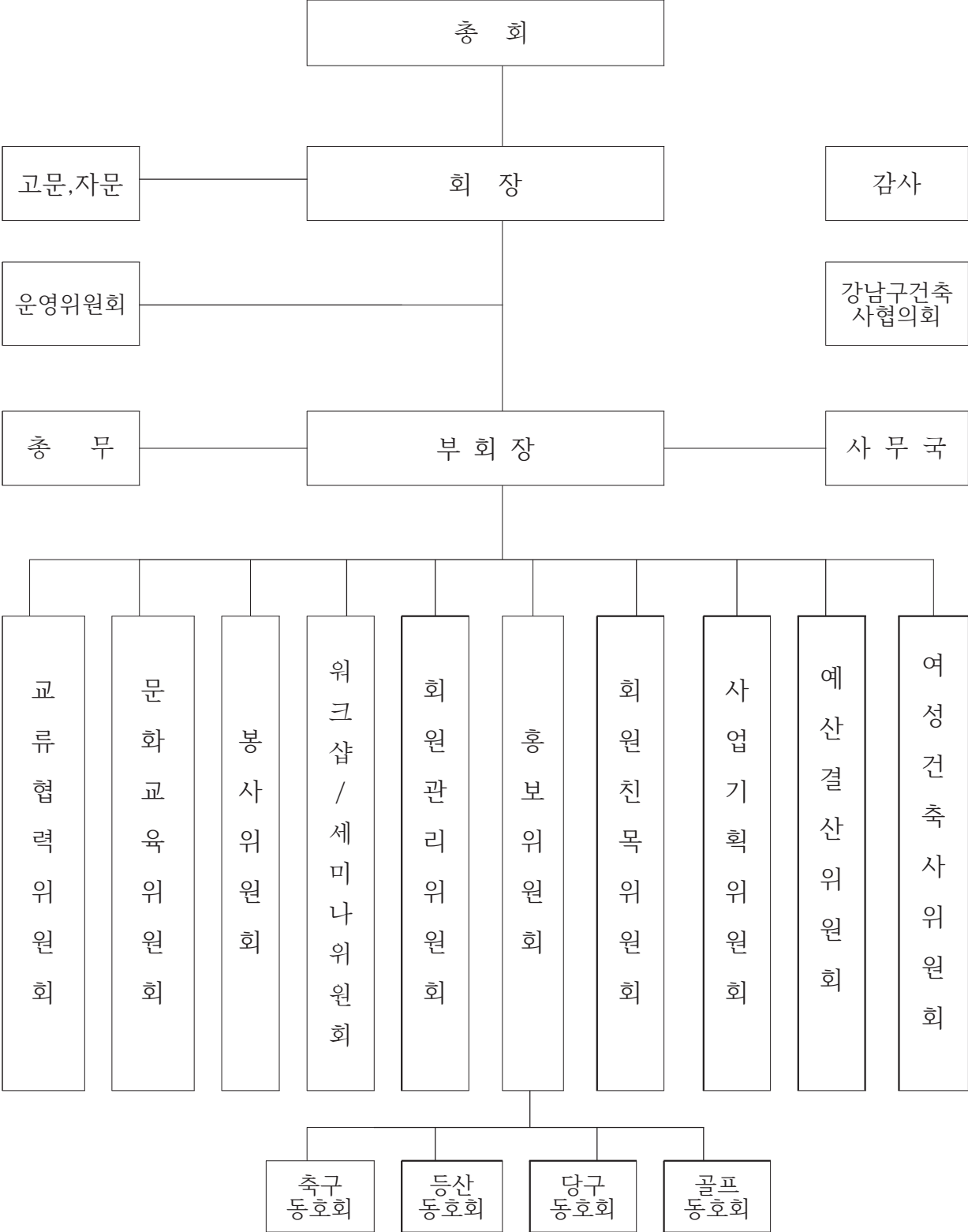
▶ 고문,자문 명단

고문 (11명)	김 규 태	종합건축사 예일	010-6729-5533
	신 문 섭	(주)대명 종합건축사사무소	010-5228-4703
	이 철 호	(주)승창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010-5226-2070
	김 인 수	(주)다보 종합건축사사무소	010-8593-1815
	강 성 익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010-4436-0233
	임 종 열	건축사사무소 태평	010-5221-5359
	안 택 영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010-5118-9441
	조 재 용	(주)종합그룹환경 건축사사무소	010-5282-5750
	우 창 수	(주)부민 종합건축사사무소	010-5259-0142
	이 원 희	(주)미공 종합건축사사무소	010-9036-7390
	박 운 천	(주)열림 건축사사무소	010-3891-5843
자문 (6명)	권 연 하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010-5213-7402
	김 종 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010-5221-4485
	윤 상 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010-8887-0949
	김 형 준	(주)일우준 건축사사무소	010-5213-9161
	이 운 희	성광 건축사사무소	010-5267-2837
	이 종 해	건축사사무소 청사건축	010-6363-9530

▶ 운영위원 명단

성 명		상 호	핸 드 폰
회 장	김 태 문	맥가 종합건축사사무소	010-5305-3774
부회장	홍 사 원	한섬 종합건축사사무소	010-8931-0132
	장 병 갑	에이앤티 건축사사무소	010-9056-0438
총 무	정 진 섭	형공 건축사사무소	010-4111-4012
	남 현 우	세븐웍스건축사사무소	010-5551-0458
감 사	정 진 오	(주)에스지 종합건축사사무소	010-6227-9510
	안 흥 섭	성준 종합건축사사무소	010-5380-4126
운영위원	김 현 철	(주)주한종합건축사사무소	010-3538-7550
	김 혜 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	010-2739-7420
	김 효 태	(주)에이이엔 도시건축사사무소	010-6323-0586
	박 근 만	(주)건축사사무소 엠비	010-2373-9985
	유 광 열	(주)터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010-3774-7781
	이 옥 정	마로안건축사사무소	010-8150-9330
	장 덕 기	(주)시그에이건축사사무소	010-5248-6948
	김 윤 옥	건축사사무소 명장	010-3888-4813
	송 준 환	명원 종합건축사사무소	010-8606-1374
	김 동 희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010-2507-1677
	하 상 호	(주)씨엔디자인종합건축사사무소	010-5237-0705
	윤 유	(주)알파플러스건축사사무소	010-9022-0614
	조 재 경	도시와집 건축사사무소	010-3245-8992
	이 신 호	이신 건축사사무소	010-9046-1018

강남구 건축사회 조직도



강남구건축사회 소위원회 명단

위원회	업무내용	위원장	위원
교류협력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건축물 ◆ 건축문화제 행사 지원 ◆ 서울시청 규제개혁위원회 상설회의 	변문수	박봉준, 김수희, 박제환
문화교육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탐방지원 및 선정 	송준환	변문수, 음수진, 남상득
워크샵 /세미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및 탐방 추진 ◆ 워크샵 / 세미나 	안흥섭	장병갑, 남현우
봉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캠페인 지원 ◆ 재능기부(민원상담) ◆ 사랑의 집 고치기 ◆ 기타 봉사활동 추진 및 지원사업 	장종덕	이윤희, 송준환, 조재경
홍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사업 ◆ 강남 소식지 발행 ◆ 강남구건축사회 대내외 홍보업무 	김동희	정진오, 이종열
회관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약에 따른 사업 	홍사원	정진섭, 안흥섭, 이성표
회원친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친목 관리 ◆ 서울건축사회 체육대회 지원 및 회원관리 ◆ 회원 송년의 밤 행사 관리 ◆ 총회 행사 추진 및 지원 	이종우	박은규, 윤재현, 백원철
사업기획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구건축사회 사업계획(안)수립 ◆ 각종 제도개선 및 정비사업 ◆ 대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 	장병갑	상대정, 곽동진, 강병훈
회원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회원 영입 활성화 촉진 ◆ 회원확충 행사지원사업(정담회등) ◆ 회원 윤리 및 징계 ◆ 지구장 활성화 촉진 ◆ 건축심의 자료 및 구청 점검자료 수집 및 자료 분리 	박근만	김혜란, 유광열
예산,결산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수립 및 결산 등 	이윤희	백원철, 남현우
여성건축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축사의 회원 친목 	김윤옥	윤영선, 이옥정, 최은정
청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건축사의 회원 친목 	이옥정	남현우, 이신호, 강철규

▶ 건축사 입회 현황

* 이하 정회원 기준

건축사	사무소명	주소	연락처
심성보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강남구 테헤란로 516, 6층(대치동,정헌빌딩)	555-4196
이배원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강남구 테헤란로 516, 6층(대치동,정헌빌딩)	555-4196
이윤호	건축사사무소 디디	강남구 강남대로94길67도연빌딩505호	02-409-8759
이선경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봉은사로 129,2층	02-3484-8700
안태만	(주)해담건축건축사사무소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55,503호	070-4223-3224
신수진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봉은사로 422,4층	3147-3000
정승복	리트머스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봉은사로78길 6	564-5588
김나미	(주)대미건축사사무소	도곡로27길 3	6326-8511
전상목	(주)강남건설건축사사무소	강남구 학동로 431, 대웅빌딩 402호	3672-0405
김수희	(주)샤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밤고개로1길10,514호(수서동,수서현대벤처빌)	575-9011
정재진	(주)서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강남대로94길67도연빌딩505호	070-5066-4664
박보영	(주)케이디에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언주로 147길 43 4층	
최은정	(주)아이씨디플랜 건축사사무소	강남구 개포로25길 3-4,3층(개포동)	572-0188
성기수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7디에이빌딩	531-0446
안용배	소노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봉은사로68길 55-3,1층	979-7365
이승종	리엠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영동대로738, 505호(청담동,현대오피스텔)	010-7327-0196
박홍수	(주)건축사사무소 삼급하기삼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808호	070-4459-2101
이주형	(주)옥토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남부순환로 2722, 5층(도곡동, 삼원빌딩)	070-7777-2257
박지윤	나인타키텍터스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24 강림빌딩 2층	
장건석	(주)디에스피에이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301호	02-518-4800
천병권	(주)건축사사무소 디움	강남구 논현로 126길 22(논현동,3층)	
현미주	레드우드 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언주로114길 29-11. 502호	0507-1362-3846

5. 주요업무보고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월	업 무 내 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의 - 임원단, 총회준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우리회 감사 - 고문 회의 - 등산동호회 시산제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의 - 51회 정기총회 개최 - 서울건축사회 정기감사 - 대한건축사협회 총회 - 상설교차점검 - 축구, 당구, 등산 동호회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의 - 서울건축사회 총회 - 상설교차점검 - 축구, 당구, 등산 동호회 - '강원,경북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 건축사대회 TF위원회 - 강남건축문화제 위원회

2022년 하반기주요업무보고

월	업 무 내 용
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회의 - 상설교차점검 - 강남건축문화제 위원회 - 동호회 운영TF위원회 - 문화교육위원회(2022 아름다운건축물 탐방) - 건축사대회 TF위원회 - 축구, 당구, 등산 동호회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회의 - 대한민국건축사대회(제주도) - 강남건축문화제 위원회 -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시행 - 강남구청장,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봉사위원회(사랑의 집 고치기) -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회의 - 운영위원회회의 - 상설교차점검 - 우리회 워크숍(충남 보령) - 2022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 강남건축문화제 개최 - 송년회 - 축구, 당구, 등산 동호회

▶ 기부현황

이름	사무소명 / 업체명	비고
우순곤	(주)정안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박근만	(주)건축사사무소 엠비	
임영석	액츠 건축사사무소 (주)	
김태문	맥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장덕기	(주)시그에이건축사사무소	
홍사원	(주)한섬 건축사사무소	
김수희	(주)샤건축사사무소	
장병갑	에이앤티 건축사사무소	
김윤옥	건축사사무소 명장	
박봉준	와이애피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은규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대정	(주)와이케이에이치 건축사사무소	
안흥섭	성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병림	(주)우진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운천	(주)열림건축사사무소	
	(주)민예	
	법무법인 청출	
	크린공조시스템	
	마이다스아이티	
	극동크리트	

▶ 안전점검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공개공지 및 미술장식품, 중형,대형,부설주차장등		
1	강일원	(주)에이앤유플러스건축사사무소	23	신경선	건축사사무소 에스앤디아이
2	강철규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24	안흥섭	성준 종합건축사사무소
3	곽동진	에이디에프포유 건축사사무소(주)	25	윤유	(주)알파플러스 건축사사무소
4	곽재관	건축사사무소 팀투	26	윤재현	머릿돌 건축사사무소
5	권영주	SV건축 건축사사무소	27	이성표	(주)에이엔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6	김달위	(주)솔지원 건축사사무소	28	이영묘	(주)예하 건축사사무소
7	김승욱	(주)기림 건축사사무소	29	이영호	(주)리엔에이토탈 건축사사무소
8	김윤욱	건축사사무소 명장	30	이윤희	성광 건축사사무소
9	김태문	맥가 건축사사무소	31	이종열	종합건축사사무소 백산
10	김형준	(주)일우준 건축사사무소	32	이종해	건축사사무소 청사건축
11	김효태	(주)에이이엔 도시건축사사무소	33	장병갑	에이앤티 건축사사무소
12	남현우	세븐웍스건축사사무소	34	전철상	CS건축사사무소
13	도형석	바로건축사사무소	35	정진오	(주)에스지 종합건축사사무소
14	민경철	다솜 건축사사무소	36	주순희	(주)미형건축사사무소
15	박남규	디앤디그룹 건축사사무소	37	홍종철	(주)크레오파트라 건축사사무소
16	박봉준	(주)와이애플 종합건축사사무소	38	장종덕	(주)피에이건축사사무소
17	박운천	(주) 열림 종합건축사사무소	39	손창미	건축사사무소 창
18	박은규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40	유여훈	해이건축사사무소
19	박흥석	건축사사무소 율하	41	정승복	리트머스건축사사무소
20	백원철	(주)한주 종합건축사사무소	42	전상목	(주)강남건설건축사사무소
21	변문수	무운건축사사무소(주)	43	안윤정	(주)티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22	송준환	명원종합건축사사무소	44	이윤희	건축사사무소 디디

▶ 경조사 현황

* 정회원 기준

이름	사무소명	내역
이성표 건축사	(주)에이엔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자녀입학
홍사원 건축사	(주)한섬 건축사사무소	본인회갑
김세중 건축사	코파 건축사사무소	배우자회갑
정양대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JYD도시건축	자녀결혼
김승욱 건축사	(주)기림 건축사사무소	배우자 회갑
조재용 건축사	(주)종합그룹환경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손원진 건축사	아성 건축사사무소	장모상
강명웅 건축사	(주)에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모친상
권연하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엔씨	자녀결혼
강준규 건축사	(주)이건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김세중 건축사	코파 건축사사무소	자녀결혼
강철규 건축사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친상
양성광 건축사	(주)종현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배우자회갑
박남규 건축사	(주) 디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친상
양성광 건축사	(주)종현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친상
김나미 건축사	(주)대미건축사사무소	자녀결혼
김한충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가	모친상
고영우 건축사	(주)우리 종합건축사사무소	배우자모친상
양성광 건축사	(주)종현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배우자 모친상

6. 2023년 일정 및 주요행사계획

2023년도 일정 및 주요행사 계획표

월	일	행 사 내 용	운영위원회 일정
1	8	예산결산위원회	1.27
	15	총회준비위원회	
	19,20	정기감사, 고문회의	
	28	서울감사	
2	16	제51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2.17
	24	대한건축사협회 총회	
	25	건축사신평 총회	
3	3	공제조합 총회	3.24
	15	고문,자문회의	
	17	서울건축사회 총회	
	18	운영위원회(신임임원 상견례)	
4	22	위원장(위원회)회의	4.21
5	10	건축과 상견례	5.19
	20	워크샵	
6	15	아름다운건축물 전시관련 회의	6.23
	24	서울건축연합회	
7	12	상설교차 점검	7.21
	13	고문,자문회의	
	14	자체감사(상반기)	
8		자원봉사활동	
9	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9.15
	19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강남구청)	
	21	건축사 정담회	
	23	산행(등산동호회 주관)	
10	17	사랑의 집 고치기	10.20
	18	우리회 워크숍	
11	15	상설교차점검	11.17
	24	2023 체육대회	
12	2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12.22
	14	강남건축문화제	
	21	서울건축사회 송년의 밤	
	27	우리회 송년회	



7. 정기 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일시: 2022년 12월19일 ~ 12월21일

▶장소: 우리회 회관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칙(2022.02.15개정)제22조 및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2014.2.27.개정) 제4조2.에 의하여 2022년도 정기감사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 사	
정 진 오	
안 홍 섭	

정기감사보고서(2023.01.31)

1. 인사말씀

2021년2월24일 제50회 우리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김태문 회장님이 당선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2021년8월26일 임시총회도 무산되었고, 2022년2월15일 제51회 정기총회도 서면총회로 같음하여서, 회원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2년9월1일~9월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시작으로 회원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2년 정기감사를 위하여 2022년12월12일 감사통보서를 제출하고 2022년12월19일~21일에 걸쳐서 정기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회칙(2020.5.19.제정) 제22조항 및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2014.2.27.개정) 제4조2에 의하여 정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감사내용

감사내용에 대하여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감사규정 제3조 ②항 규정에 의하여 “1) 일반업무 2) 회계업무 3) 관리업무 4)기타 정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분야별 감사 및 특히 현임 회장님의 슬로건인 “강남다운 강남” 이 과거 우리회 위상회복 및 역할부흥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효과적 운영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감사, 향후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 분야별 감사내용 요약

1) 일반업무

● 주요사항은 ① 회원명부(서울회, 우리회, 협의회)관리 및 신입회원 영입 ② 회원과 협회와의 의사소통 방법 ③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 ①항_ 우리회 발전을 위하여 회칙 및 관련규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무가입관련 서울회는 급격하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회에서도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합니다. 또한 그동안 병행하여 사용했던 “강남구건축사회” 와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의 명확한 관계규정을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②항_ 의사소통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밴드 등을 통하여 하고 있으나 문자 및 이메일에 의존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단순게시판 등 일부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③항_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사항 중 회의전후의 내용을 위원들에게 feed back 제공함으로써 회의 효율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리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회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회계업무

- 주요사항은 ① 세무사 결산보고서와 22년 정기총회 승인된 수입, 지출 일치여부 ②운영통장 등 통장관리 ③ 전표 혹은 지출결의서 등 결재방법
 - ▶ ①항_ 결산보고서(세무사 작성)는 규정대로 작성 되었으나 수입액 중 주요변동 사항으로 회비수입이 신입회원 21명증가로 예산대비 17,120,000원(예산액 26,500,000원)이 증가되었고 점검비 수입이 예산대비 21,875,000원(예산액90,000,000원) 감액 되어, 수입예산액(146,000,000원)대비 약 97%를 달성하였고, 지출액은 124,715,650원(예산액 142,245,000원)으로 예산액대비 약 88%를 지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 ②항_ 통장관리는 4개 통장(기탁·적립금 통장 , 서울회 보조금통장, 운영통장, 행사비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통장 및 행사비 통장은 별도 구분의 의미가 특별히 없으므로 관리효율 상 3개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③항_회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정리되고 있으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직원께서는 항목이 기재된 전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총무,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최소 월1회 (월례회의시) 이상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3) 관리업무

- 주요사항은 ① 동호회 활동(등산, 축구, 당구) ②각종행사(총회, 건축문화제, 워크샵, 문화탐방, 자원봉사, 신입회원 정담회, 교육훈련, 세미나, 건축사대회 등) 진행사항 ③회관의 관리(집기, 비품 포함) 및 이용
 - ▶ ①항_ 동호회 활동으로 3개 동호회를 각각 1,000,000원/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동호회는 동호인,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불분명한 자료제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운영규칙에 따라 동호인명부 및 우리회 지원금 사용 거래 내역을 분기별(상반기, 하반기)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자료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이를 지원승인 혹은 불승인 결의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②항_각종 행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행사기획 방향, 필요예산 확보 등 조직적인 준비로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선제적 대응을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③항_관리목록 작성 등 유지관리 노력을 계속하시길 바라며, 향후 회관이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업무

● 주요사항은 ① 대관청 및 서울회, 본협에 대한 대응전략 (각종 심사위원, 임원추천 등) ② 각종 수익사업 회원배분 사항 및 실적회비 입금 확인 ③ 기탁금(찬조금) 접수 및 영수증 발행 여부

▶ ①항_ 대관청 및 서울회, 본협에서 요청한 임원추천, 각종 심사위원 등 우리회원 권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요청사항, 결과 등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 ②항_ 수익사업 배분 등에 대하여는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배분의 기준 혹은 배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비고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배분의 기준이 우리 회원 모두의 권익이 증진 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제26대 회장님 및 집행부는 COVID-19의 한번판의 영향으로 우리회운영에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되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개정 건축사법이 2022년8월4일 시행됨에 따라 기 영업 중이던 비회원도 2023년8월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우리회 가입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강남다운 강남”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 회원단합에 노력해주신 회장님 및 집행부,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배 회원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를 마칩니다.

※ **감사결과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1 _ 감사결과 처분기준 (감사규정)

※ 참고1_ **감 사 결 과 처 분 기 준**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 정	제 규정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 의	제 규정의 위반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으로 기한이 경과되어 시정이 불가능 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개 선	감사결과 규정, 제도상 및 행정상의 결함에 위배행위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 고	가. 제 규정의 위반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행위로 인정되나 징계를 요구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동일 보직기간 중 동일사항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변 상	금전유가증권, 물품 등의 횡령, 망실, 훼손과 업무상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징 계	가.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동일 보직기간중 동일사항으로 3회연속 경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다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현지시정	당사자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없고 절차적 또는 부분적인 사항으로 시정이 용이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즉시 시정함이 업무의 처리 및 예산의 손실방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부의 안전

제1호 의안

2022년 강남구건축사회
일반회계및 결산서 승인의 건

1. 의결주문 :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22회계년도 결산을 붙임과 같이 제52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근 거 : 회칙 제14조 제1항 2호

제14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이하생략

▶ 기탁금 및 적립금, 운영통장 자산현황

①기탁금 및 적립금

(2022년 12월 31일 현재)

번호	금액(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일자	만기일자
10	16,848,310	국민	268801-04-212130	2016.11.29	일반통장

② 운영통장

(2021년 12월 31일 현재)

번호	금액(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일자	만기일자
66	98,012,061	국민	268801-04-212101	2016.11.29	일반통장
1	2,306,059	국민	268801-04-227295	2019.05.22	일반통장
1	56,871,545	국민	268801-04-241413	2021.07.07	일반통장

③자 산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상가동 216호

④현금시재 : 24,629원

①+ ② = 174,037,975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수입현황

(2022년 12월31일기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비고
	회비수입	26,500,000	43,620,000	신입회원21명
기 타 수 입	서울건축사회	25,000,000	26,230,850	교부금 보조금70만X12=8,400,000
	점검비	90,000,000	68,125,000	실적회비수입
	공사안내판	1,500,000	1,096,000	
	기타	3,000,000	2,449,561	이자수입 149,561 찬조수입등
	합 계	146,000,000	141,521,411	

지출세부내역

(2022년 12월 31일 기준)

예산과목		예산	지출	세부내역
항	목			산출근거
회의비	정기총회	10,000,000	4,769,500	공로패, 총회책자, 등기타잡비)
	운영위원회의	3,500,000	2,770,000	운영위원회의총11회, 평균15명기준
	소위원회	3,500,000	3,549,680	각종 위원회 회의등
	고문회의	1,200,000	183,000	고문회의
소 계		18,200,000	11,272,180	
관리비	회관	4,500,000	3,474,800	세금, 보험
	관리비	5,200,000	5,001,060	관리비
	수리수선비	700,000		
소 계		10,400,000	8,475,860	
사업비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8,000,000	7,997,040	건축사대회
	사회사업지원비	4,000,000	4,455,000	공사안내판, 김장나누기
	광고비	600,000	666,000	상설교차등
	친목행사 지원금	3,000,000	3,000,000	축구, 등산, 당구 동호회지원비
	산학협력지원비	4,000,000	4,000,000	경기대, 경북대 장학생4명지원
	건축기행 및 세미나 워크샵	9,000,000	7,298,180	문화탐방
	건축문화제	6,000,000	6,500,000	
소 계		34,600,000	33,916,220	

예 산 과 목		예 산	지 출	세부내역
항	목			산출근거
인건비	직 원	25,127,000	25,127,000	퇴직금포함, 4대보험 포함
	퇴 직 금	2,218,000	2,218,000	
	시간외수당	1,500,000	1,500,000	
소 계		28,845,000	28,845,000	
사무비	통 신 비	2,500,000	2,445,350	문자, 전화료등
	소모품비	2,800,000	2,708,420	문구류, 복합기렌탈, 회의간식등
	도서인쇄 및 정기간행물	3,600,000	158,250	명합등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198,000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리뉴얼	0		
소 계		9,200,000	5,510,020	
경 조 비		9,500,000	9,550,000	화환, 회원경조사비
홍 보 비		6,000,000	6,115,900	강남문화제관련 /건축과관련
업 무 추 진 비		12,000,000	12,000,000	변동없음
비 품 취 득 비		500,000	50,000	중고모니터구입(CCTV용)
세무기장비		1,000,000	924,000	세무기장비
소 계		29,000,000	28,639,900	
예 비 비		12,000,000	7,615,000	설선물, 컴퓨터교체
기타지출(현금)			441,470	지급수수료(10,040) 운반비(431,430)
총 계		142,245,000	124,715,650	

제2호 의안

2023년 강남구건축사회
일반회계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1. 의결주문 :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23회계년도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제52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근 거 : 회칙 제14조 제1항 2호

제14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이하생략

수입예산

항	목	22예산	23예산	비고
	회비수입	26,500,000	51,700,000	신입회원 가입(30명)X92만원=2,760 -(30명X기탁금40만원)+예 비수입25만원=810만원
기탁수 입	서울건축사회	25,000,000	30,000,000	건축사 의무가입(교부금)
	점검비	90,000,000	75,000,000	작년과 유사예상 (건축사수당인상)
	공사안내판	1,500,000	1,000,000	
	기타	3,000,000	2,500,000	찬조, 이자수입등
합 계		146,000,000	160,200,000	

지출예산

예산과목		2022예산	2023예산	비교		세부내역
항	목			증	감	산출근거
회의비	정기총회	10,000,000	15,000,000	5,000,000		물가인상(식대등) 대면총회
	운영위원회의	3,500,000	3,500,000			동결
	소위원회	3,500,000	3,500,000			
	고문회의	1,200,000	1,200,000			
소계	18,200,000	23,200,000	5,000,000			
관리비	회관	4,500,000	4,500,000			
	관리비	5,200,000	5,500,000	300,000		
	수리수선비	700,000	700,000			
소계	10,400,000	10,700,000	300,000			
사업비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8,000,000	9,000,000	1,000,000		물가상승/회원증가
	사회사업지원비	4,000,000	4,000,000			물가인상
	광고비	600,000	800,000	200,000		물가인상
	산학협력지원비	4,000,000	4,000,000			
	친목행사 지원금	3,000,000	4,000,000	1,000,000		골프동호회 신설
	건축기행 및 세미나 워크샵	9,000,000	9,000,000			
	건축문화제	6,000,000	9,000,000	3,000,000		실지출비용반영
	건축탐방지원비		4,000,000	4,000,000		건축과요청신설 (토요탐방등)
소계	34,600,000	43,800,000	9,200,000			

예산과목		2022예산	2023예산	비교		세부내역
항	목			증	감	산출근거
인건비	직원	25,127,000	26,000,000			물가대비 6% 인상
	퇴직금	2,218,000	2,645,000			
	시간외수당	1,500,000	2,000,000			
소계		28,845,000	30,645,000	1,800,000		
사무비	통신비	2,500,000	3,000,000	500,000		
	소모품비	2,800,000	3,000,000	200,000		
	도서인쇄 및 정기간행물	3,600,000	1,000,000		2,600,000	소식지 제작보류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300,000			
소계		9,200,000	7,300,000	700,000	2,600,000	
경조비		9,500,000	11,000,000	1,500,000		회원증가
홍보비		6,000,000	7,500,000	1,500,000		회원증가
업무추진비		12,000,000	12,000,000			
비품취득비		500,000	500,000			
세무기장비		1,000,000	1,100,000	100,000		
소계		29,000,000	32,100,000	3,100,000		
누계		130,245,000	148,745,000			
예비비		12,000,000	12,000,000			
총계		142,245,000	159,745,000	17,500,000		

제3호 의안

임원선출 승인의 건
가. 회장1인 나. 감사1인 다.운영위원8인

1. 의결주문: 회칙 제8조에 의거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임기만료된 임원을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함
3. 근거 : 회칙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4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이하생략

제17조(임원) 우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부 회 장 : 3 인이내
3. 총 무 : 2 인이내
4. 운영위원 : 16인이내 (부회장포함)
5. 감 사 : 2 인이내

제19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부회장은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④운영위원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가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선출대상 임원

구 분	선출 인원	임 기
회 장	1	임기2년
감 사	1	임기2년
운영위원	8	임기2년


제4호 의안

기타 안건

회 칙

제정 2020. 05. 19.

개정 2022. 02. 15.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회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서울회”) 회칙 제3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건축사회(이하“우리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회는 서울회 회칙 제2조(목적)와 우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우리회의 운영은 협회의 ‘지역건축사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및 서울회 회칙’에 의거하여 우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제5조(사업) 우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 교류 활성화 및 친목도모
2. 각 구청 건축관련 조례 등의 건축사 업무 개선 발전
3. 관할구청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
4. 서울회에서 위임된 업무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제규칙) ①우리회는 이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협회 정관 및 서울회 회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정관 및 회칙에 따라 우선 시행하고 우리회의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우리회의 회칙 또는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및 서울회의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우리회의 회원은 강남구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서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우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회에 등록된 자
2. 명예회원 : 국내외 건축문화 창달 및 협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 우리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제8조(입회) ①우리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회의 회원 중 우리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

②정회원 및 명예회원 이외에 제7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

출하여 우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우리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우리회의 임원, 협회 서울회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4. 우리회로부터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 정관과 서울회 및 우리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와 서울회 및 우리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 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제명 : 협회 정관 및 서울회 회칙에 의거 제명처분된 경우
3. 퇴회
4.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5. 타건축사회로 전출

②제1항 제4호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취소 결정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우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 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총수의 10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 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우리회에 대한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⑤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FAX, 전자문서 등 포함)로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회장은 총회개최 결과를 서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우리회 운영을 위한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6.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5조(성립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1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회칙 제정 및 개정,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총회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우리회 회원의 서면결의로 행사하거나 임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회원의 의결권 위임범위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한 부의안건에 한하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위임 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⑥회원은 제4항에 의한 위임을 하는 경우 서면 위임장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우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부 회 장 : 3 인 이내
3. 총 무 : 2 인 이내
4. 운영위원 : 16인 이내 (부회장포함)
5. 감 사 : 2 인 이내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우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우리회 회무를 담당한다.
-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제25조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⑤감사는 우리회의 업무와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부회장은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④운영위원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가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⑤기타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회 및 우리회 임원선거관리규칙을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제1조(목적),제2조(적용범위),제3조(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의),제4조(선거관리)제1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해체), 제6조(위원회 직무),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제8조(선거인 명부), 제9조(후보자 등록)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고문 등) ①회장은 우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회장은 우리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직 인사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추대회원은 만70세 이상으로서 우리회의 가입기간 합계 2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22조(감사실시)①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우리회 업무와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감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내 시정된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우리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위원회는 매월 소집한다.

③임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제3항 제2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의 위임사항
4. 회칙 외 우리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5.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6. 회원의 징계 및 포상의 결정
7. 서울회 및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주요사항 건의
8. 협회 정관 제14조에 의한 협회 대의원 보선추천
9. 제33조(재정) 제1항 제3호의 실적회비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제26조(성립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 운영위원 3분의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회의록) ①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8조(위원회) 우리회는 사업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와 지구를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우리회의 사업, 정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칙이 없는 한 협회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31조(사무기구) ①우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급여)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정) ①우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 회 비 : 우리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2. 정회원회비 : 정회원이 매월(또는 년1회)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3. 실적회비 : 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4. 운영보조금 : 서울회에서 운영비용의 일부로 지원하는 보조금
5. 찬조금 :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회의 발전 또는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찬조하는 금품
6. 기타 수익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4조(회계) 우리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35조(회계년도) ①우리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회계년도 개시 후 총회 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제36조(결산서 제출)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비용 등)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포상) ①우리회 회장은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우리회 발전과 대외적으로 우리회를 빛낸 회원
2. 우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

제39조(징계)①우리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우리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저해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권리정지
4. 제명

②제1항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 할 수 있다.

③제1항 이외에 우리회의 정회원회비를 미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미납인 경우 권리정지
2. 4년 이상 미납인 경우 제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서울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에 대한 특례) 본회의 회칙 제정 이전에 선출되어 재임 중인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규정 등에 대한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칙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선출방법의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위원 중 절반(1/2)의 임기는 교차선임한다.

제5조 고문위원, 추대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1987.12.10.
1988.12.02.
1989.11.30.
1990.12.26.
1991.12.03.
1992.12.08.
1994.04.01.
1994.11.22.
1995.12.06.
1996.01.03.
2000.02.17.
2001.02.15.
2003.03.06.
2016.02.23.
2017.02.15.
2018.02.08.
개정 2021.02.24.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남구건축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사 본연의 임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파라곤 상가동 216호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 교류 활성화 및 친목도모
2. 관할구청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
3. 강남구건축사회에서 위임된 업무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제규칙) 협의회는 이 회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적용규정) 협의회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강남구건축사회 회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 협의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8조(입회)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칙 제23조의 입회비와 기금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의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②회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강남구건축사협의회 회관의 지분.
2.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적립금 및 협의회소유 재산일체.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협회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제23조 제1항 1~3호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회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제명 : 협회회 운영규약 및 서울회 회칙에 의거 제명처분된 경우 또는 제 29조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
 3. 퇴회 : 협회회 회원으로서 자격과 권리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본인이 퇴회를 신청하는 경우.
 4.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업무신고 효력상실
- ②제1항 제4호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취소 결정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 ③제1항에 의해 협회회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 날짜를 기준으로 탈퇴 반환금에서 미납된 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준다.

제 3 장 총 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협회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건축사회 총회에 준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4. 협회회 입회비 및 회비의 결정
 5.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6. 협회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사항 일체
-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5조(성립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20분의1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회칙 제정 및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협회회의 임원은 강남구건축사회의 임원이 겸임한다.

제18조(준용규정) 협회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제4장 임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협회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준용규정) 협회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제5장 운영위원회]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1조(위원회) ①협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회관관리 위원회

②협회회의는 추진하는 목적을 위해 제1항의 위원회외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협회회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건축사회 회칙 [제6장 위원회]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23조(재정) ①협회회의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 회 비 : 우리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2. 정회원회비 : 정회원이 매월(또는 년1회)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또는 연회비)
3. 협회회의 실적운영회비 : 점검 및 감리업무등 수행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4. 기부금 및 찬조금 : 회원 또는 비회원이 본회의 발전 또는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찬조하는 회비
5. 기타 수익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회계)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25조(회계년도) ①협의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회계년도 개시후 총회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제26조(결산서 제출)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비용 등)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경조사비용 등) 회원의 경조사내용과 경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9 장 징 계

제29조(징계)①협의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우리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저해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주의
- 2.경고
- 3.권리정지
- 4.제명

②제1항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 할 수 있다.

③제1항 이외에 우리회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2년 이상 미납인 경우 권리정지
2. 4년 이상 미납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협의회 가입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제8조 5호의 운영위원 선출방법의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위원중 절반(1/2)의 임기는 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3. 제8조 1의 규정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제12조 1의 회비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4. 본 규약은 199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0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약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약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약은 2017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약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 1996. 4. 26.

개정 2001. 2. 21.

개정 2003. 3. 06.

개정 2018. 2. 08.

개정 2019. 2.14.

개정 2021. 1. 21.

개정 2023. 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건축사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에서 정한 임원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총회 구성원을 말한다.

②후보자 라 함은 제8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후보자 자격심사에 결격사유 없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자격심사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후보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후보자로 본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 ①이 규칙에 의한 선거사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 협조 요구를 받은 사무처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해체) ①우리회 회장은 선거가 있는 경우 선거 실시 30일 이전에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단, 당선인 확정 후 선거사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체된다.(2014.12.8.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최근 임기를 마친 전 임회장 순으로 한다.

④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위원회 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선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⑨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후보자는 1회에 한해 위원 1인에 대하여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되는 위원은 사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추천에 의거 회장이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①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공고

2. 후보자 등록관리
 3. 선거인명부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홍보물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결정
 8. 선거부정에 관한 사항의 심사·처분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 또는 업무 수행이나 참여, 진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선거인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제6조에 의거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7조 (선거권이 없는 자)

- ① 강남구 건축사회 정회원으로서 행정처분에 의한 등록 취소된 자.
- ② 강남구 건축사회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미납(선거일20일전)한 자.

제 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①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 ②강남구 건축사회 정회원으로서 행정처분에 의한 등록 취소된 자.(행정소송중인 자 포함)
- ③강남구건축사회 및 건축사협의회 정회원이 아닌자.
- ④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정회원으로 등록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본협 및 서울 시건축사회 임원이었거나 임원활동중 일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로 한다.
- ⑤운영위원의 경우 강남구건축사협의회 정회원으로 등록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선거인명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작성하여 선거일 7일 이전까지 확정한다.

- ②선거인명부는 선거 공고일에 우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③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은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0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⑤제1항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총회 참석자 명단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장 후 보 자

- 제10조(후보자 등록)** ①우리 회 회장 또는 감사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2. 기탁금
 3. 이력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③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접수 및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기한까지 등록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 실시 전까지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탁금) ①기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선거 : 300만원
 2. 감사선거 : 50만원
- ②기탁금은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선거관리위원회 개최비용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 ③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당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우리회의 수입으로 한다.
1.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3.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경우
 4. 당선무효로 결정된 경우

제12조(기호 추천)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후 결격사유 없는 후보자는 기호 추천을 하여 기호를 결정한다. 단, 본인이 참석 못할 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다.

제13조(등록무효) ①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등록무효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때
2. 고의적으로 후보자등의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정관 또는 제 규정이나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위반한 때
5.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직임원의 후보자 등록) 재임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또는 감사 선거에 후보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2.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 동호회 및 전문연구회 회장

제 5 장 선거운동

제17조(정의 등)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선거일에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선거운동기간 등) ①선거운동은 제10조에 의하여 등록한 후보자로 제한하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에 한한다. 단,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및 홍보) ①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가 직접 개최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참여
2.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운영

3. 전자우편,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SNS를 통한 홍보
4. 우리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5. 선거사무소 개설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6.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이 경우 선거인을 방문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7. 제19조 제1항 3, 4호에 의한 홍보는 5회 이내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8.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 ②구건축사회, 동호회, 친목회, 연구회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의 모임이나 회의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
 - ③위원회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④위원회는 선거공고 시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선거홍보를 후보자별로 동일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⑥후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후보자별 개별 선거홍보는 할 수 없다.
 - ⑦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인에게 일괄 발송하여야 한다.
 - ⑧선거사무실은 1개소에 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 금지) ①후보자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인신공격
2. 기부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선거홍보행위
4. 간행물에 후보자에 대한 집필 또는 논평 게재
5. 보직의 약속이나 사업 등 이권을 약속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8. 기타 공직선거법 및 일반 관례에 준하는 선거위반 행위
9. 그밖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 ②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 ③선거운동 세부 금지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시정사실을 투표일 시전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20조의 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다.
- ③위원회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거 및 투표

제22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하되,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단, 선거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소) 위원회는 선거실시 전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24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양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기호추첨은 후보등록마감 직후 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③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 ④위원회는 선거 실시 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절차) ①투표는 투표 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아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에 ⊙표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참관) 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소 안에서 투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참관인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후보자는 선거당일 선거실시전까지 2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개표 및 당선

제27조(개표관리) ①개표관리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위원이 한다.

- ②개표된 투표용지는 당선확정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기한다.

제28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지 명확한 것
6.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9조(당선확정) ①유효투표자의 다득표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이상 득표 시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엄어집

④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협의회 임회일자가 빠른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후 선거결과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⑥당선인의 임기는 취임한 때부터 개시된다.

제30조(당선무효) 선관위는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 규칙을 위반하여 부정으로 당선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선무효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선거

제31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 시 득표수가 투표인의 과반수가 미달될 때

②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 투표방식등 재선거의 관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선거결과 또는 당선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 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9 장 보 칙

제33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우리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고, 2021년3월이후 시행한다.

- 부칙 -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1996년4 월26 일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01년2 월21 일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03년3 월6 일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18년2 월8 일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19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2023년1 월6 일부터시행한다.

9. 강남구건축사(협의)회 경조금 지급기준

경 조 금 지 급 기 준

(회비미납회원 지출불가)

경 조 내 용	경조금	보조지급	준 비 서 류
1. 회원사망	70 만원	조화	사망진단서 본인통장사본
2. 회원 배우자 사망	30 만원	조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3. 회원 회갑(1회에 한함)	40 만원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4. 회원 직계 및 배우자 부모 사망	30 만원	조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5. 회원 배우자 회갑(1회에 한함)	20 만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6. 회원 본인 결혼	30 만원	화환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7. 회원 자녀 결혼	10 만원	화환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8. 회원 입원(년1회만 - 10일이상 입원시)	20 만원		입원확인서 본인통장사본
9. 회원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보조금	20 만원		입학·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사본
<p>※ 입회일 기준 3년 이내는 경조금의 50%를 지급함.</p> <p>※ 회원신청시 지급함(단, 지급기간은 1년이내)</p> <p>* 결혼 및 사망의 경조금은 화환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한다.</p>			

10. 결산보고서

決算報告書

第7期

自 2022 年 1 月 1 日

至 2022 年 12 月 31 日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결산 의견서

세무사 이종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협의회” 로부터 2022년귀속 회계에대한 결산검사를 위촉 받아 건축사협의회 수입.지출 및 예산집행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어서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협의회” 회계 결산서는 수입.지출 및 현금흐름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였다고 보아 이를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3일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월계표
5. 계정별 원장
6. 현금출납장

세무사 이종명



재 무 상 태 표

제 7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74,062,604		157,256,843
(1) 당 좌 자 산		174,062,604		157,256,843
현 금		24,629		169,499
보 통 예 금		174,037,975		157,087,344
(2) 재 고 자 산		0		0
II. 비 유 동 자 산		564,876,400		564,876,400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564,876,400		564,876,400
파 라 곤 2 1 6 호		564,876,400		564,876,40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738,939,004		722,133,243
부 채				
I. 유 동 부 채		0		0
II.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자 본				
I. 자 본 금		623,875,880		623,875,880
자 본 금		623,875,880		623,875,88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115,063,124		98,257,36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15,063,124		98,257,363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6,805,761 원				
전기 : 18,657,275 원				
자 본 총 계		738,939,004		722,133,24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38,939,004		722,133,243

손 익 계 산 서

제 7(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41,521,411		148,469,769
이자수입	149,561		114,769	
회비수입	43,620,000		33,970,000	
서울건축사회	26,230,850		23,928,000	
실적회비수입	68,125,000		83,427,000	
안내판수입	1,096,000		2,830,000	
찬조수입	2,300,000		4,200,00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141,521,411		148,469,769
IV. 판매비와관리비		124,715,650		129,812,494
정기총회	4,769,500		8,515,180	
운영위원회	2,770,000		1,929,000	
소위원회비	3,549,680		3,123,400	
고문회비	183,000		665,000	
회관	3,474,800		3,345,760	
관리비	5,001,060		5,150,180	
수리수선비	50,000		360,000	
체육대회및단합대회	7,997,040		400,000	
사회사업비	4,455,000		2,570,000	
홍보비	6,115,900		9,592,500	
친목행사지원비	3,000,000		3,600,000	
워크숍	7,298,180		6,454,750	
인건비	28,845,000		28,845,000	
통신비	2,445,350		2,248,510	
소모품비	2,708,420		2,752,730	
도서인쇄비	158,250		990,000	
홈페이지	198,000		3,163,000	
경조비	9,550,000		9,100,000	
업무추진비	12,000,000		12,000,000	
비품취득	0		157,340	
예비비	7,615,000		10,460,000	
산학협력지원비	4,000,000		4,000,000	
지급수수료	10,040		852,140	
소송비	0		7,865,404	
광고비	666,000		500,000	

손 익 계 산 서

제 7(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운 반 비	431,430		248,600	
건 축 문 화 제	6,500,000		0	
세 무 기 장 비	924,000		924,000	
V. 영 업 이 익		16,805,761		18,657,275
VI. 영 업 외 수 익		0		0
VII. 영 업 외 비 용		0		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6,805,761		18,657,275
IX. 법 인 세 등		0		0
X. 당 기 순 이 익		16,805,761		18,657,275

합계잔액시산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회

(단위 : 원)

차		계 정 과 목	대		
변	합		변	잔	
잔	액	합	계	잔	액
174,062,604	338,498,837	유 동 자 산	164,436,233		
174,062,604	338,498,837	< 당 좌 자 산 >	164,436,233		
24,629	989,499	현 금	964,870		
174,037,975	337,509,338	보 통 예 금	163,471,363		
564,876,400	564,876,400	비 유 동 자 산			
564,876,400	564,876,400	< 유 형 자 산 >			
564,876,400	564,876,400	파 라 곤 2 1 6 호			
		자 본 금	623,875,880	623,875,880	
		자 본 금	623,875,880	623,875,880	
		이 익 잉 여 금	98,257,363	98,257,363	
		이 월 이 익 잉 여 금	98,257,363	98,257,363	
		매 출	141,521,411	141,521,411	
		이 자 수 입	149,561	149,561	
		서 울 건 축 사 회	26,230,850	26,230,850	
		실 적 회 비 수 입	68,125,000	68,125,000	
		안 내 판 수 입	1,096,000	1,096,000	
		찬 조 수 입	2,300,000	2,300,000	
		회 비 수 입	43,620,000	43,620,000	
124,715,650	124,715,650	판 매 관 리 비			
4,769,500	4,769,500	정 기 총 회			
2,770,000	2,770,000	운 영 위 원 회			
3,549,680	3,549,680	소 위 원 회 의 비			
183,000	183,000	고 문 회 의 비			
3,474,800	3,474,800	회 관			
5,001,060	5,001,060	관 리 비			
50,000	50,000	수 리 수 선 비			
7,997,040	7,997,040	체 육 대 회 및 단 합 대 회			
4,455,000	4,455,000	사 회 사 업 비			
6,115,900	6,115,900	홍 보 비			
3,000,000	3,000,000	친 목 행 사 지원 비			
7,298,180	7,298,180	워 크 슝			
28,845,000	28,845,000	인 건 비			
2,445,350	2,445,350	통 신 비			
2,708,420	2,708,420	소 모 품 비			
158,250	158,250	도 서 인 쇄 비			
198,000	198,000	흙 폐 이 지			
9,550,000	9,550,000	경 조 비			
12,000,000	12,000,000	업 무 추 진 비			
7,615,000	7,615,000	예 비 비			

합계잔액시산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

(단위 : 원)

차		계 정 과 목	대	
변	합		변	잔
잔	액	합	계	액
4,000,000		4,000,000		산 학 협 력 지원비
10,040		10,040		지 급 수 수 료
666,000		666,000		광 고 비
431,430		431,430		운 반 비
6,500,000		6,500,000		건 축 문 화 제
924,000		924,000		세 무 기 장 비
863,654,654		1,028,090,887		합 계
			1,028,090,887	863,654,654



THANK YOU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협의회님께

임마누엘!

협성대학교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웅비하기 위해 구성원 일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풀어주신 후원을 기억하여 온 구성원 일동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춘 봉사인,
인격을 갖춘 세계인, 그리고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성대학교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3년 2월 6일

협성대학교 교목실 드림

■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 서울건축사복지회

1983년에 설립, 1986년 재정경제부(당시 재무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서울건축사복지회에 가입된 회원과 사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공동유대로 하여 2023년 01월말 현재 조합원 약 1,340여명과 자산 약800억 원을 보유.

주요 업무

<p>서울 건축사 신협</p>	<p>1. 출자금 : 최초 10만원~5천만 원까지 1,000만원은 비과세 적용 / 4,000만원은 과세 적용</p> <p>2. 예 금 : ①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예탁금(농특세 1.4%만 부과) ②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p> <p>○ 한아름예탁금 12개월 연금리 : 5.2%, 정기적금 12개월 연금리 : 6.4% (금리 : 2023년 02월 01일 기준)</p> <p>☞ 신협예적금은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p> <p>☞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까지 입니다.</p> <p>☞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음으로 안전합니다.</p> <p>☞ 신협비과세예탁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p> <p>3. 대 출 : ① 건물 신축자금 대출(한도 30억 원) - 가족 · 직원 · 일반시공사 가능</p> <p>※ 대 지 : 감정가의 40% ~ 80%, 신축건물 : 공사금액의 50% ~ 80% (토지가 범위 내) (기초공사 후 20%, 골조공사 후 30%, 외벽공사 후 20%, 공사완료 후 20%, 사용승인 후 10%)</p>
<p>서울 건축사 복지회</p>	<p>1. 경조사사업 : 회원 및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처 또는 남편), 자녀</p> <p>① 회원본인 비혼, 결혼, 회갑, 고희, 팔순, 사망 ② 직계결혼, 직계사망, 배우자 회갑,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 출생 ③ 본인, 배우자 입원 보조비 지급 ④ 만 65세 이상 회원 여행 보조비(생일) 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보조 ⑥ 고등학교 졸업 시 보조</p> <p>2. 회원연금사업</p> <p>① 퇴직연금 사업 조성으로 매 회계년도 마다 이자배당을 연금으로 적립 ② 영구폐업 시 배당된 연금 합계액의 120% 또는 140%지급 (임의적립 시 납입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 140% 지급하며, 10년 경과 20년 미만인 경우 금액의 120%를 지급)</p>